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0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정청래·김용민·안도걸

김현정 • 이병진 • 김성환

이건태 · 허성무 · 강선우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 안·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 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 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방해한 자에"를 "방해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생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	②
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u>방해한 자에</u> 대하	<u>방해한 자, 요</u>
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
	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에